



**뉴욕주(STATE OF NEW YORK)**  
**주 선거 관리 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

뉴욕주(New York)  
알바니(Albany)  
2014 년 8 월 1 일  
개정일 2014 년 9 월 22 일

**개정된 확인서**

**뉴욕주 선거 관리 위원회 귀중:**

2014 년 11 월 4 일 화요일 뉴욕주에서 열릴 총선거에서 제안 1 번, 수정안(Proposal Number One, an Amendment)이 주민의 승인을 구하기 위해 제출될 것입니다.

**제안 1 번, 수정안 본문**

상하원 공동 결의안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independent redistricting commission) 설립과 관련하여 헌법 제 3 조의 수정을 제안함.

섹션 1. 다음과 같이 헌법 제 3 조 섹션 4 및 5 의 내용을 수정하고 새로운 섹션 5-b 를 추가할 것을 결의함(상원 동의 시).

§ 4. (a)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후 하원 의원 배분과 상원 및 하원 지역구 재조정 및 변경을 위해 뉴욕주 또는 이에 속하는 지역의 주민수는 1930 년 및 그 이후 10 년 주기로 작성되는 연방 인구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단, 해당 인구조사 및 집계 분석은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부는 1930 년 이후 10 년 주기로 수행되는 연방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인구조사에 누락이 존재하거나 연방 인구조사 결과가 과세 대상이 아닌 외국인 또는 원주민의 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연방 인구조사 결과 대신 상기의 목적을 위해 주 당국이 주 전체의 주민수 계수 및 집계분석을 수행하도록 법으로 허용한다. 연방 인구조사 결과가 주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대체적으로 제공하는 하나 상기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행정 또는 지역적 분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필요 시 입법부는 주의 해당 지역에 대한 주민수 계수를 법으로 허용하며 이는 상기 목적을 위해 부분적으로 연방 인구조사를 대체하고 연방 인구조사와 연계하여 함께 사용된다. 입법부는 재량에 따라 매 10년주기의 연방 인구조사 보고서 작성이 지연되어 1930년 이후 또는 매 10년째 해 이후 두 번째 해에 열리는 입법부의 정기 의회 시작시 사용할 수 없거나 하원 의원 배분 및 상원 지역구의 재조정 또는 변경이 해당 회기 또는 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기 목적을 위해 뉴욕주 주민의 인구통계를 주 당국에서 제공할 것을 법으로 허용할 수 있다. 1932년에 열린 정기 의회 및 1940년 이후 및 그로부터 매 10년마다 열리는 첫 번째 정기 의회에서 상원 지역구를 재조정하거나 변경하도록 하며, 1931년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10년 주기로 이러한 재조정 또는 변경이 상기에 규정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가 있다면, 예를 들어 1936년, 1946년, 1956년 등과 같이 해당 시기의 6번째 해까지 열리는 차기 의회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단, 해당 지역구가 법으로 1930년 또는 1931년에 재조정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1940년 이후 첫 번째 정기 의회가 이루어질 때까지 변경없이 이를 유지하도록 한다. [해당 지역구는 각 상원 지역구가 거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가능한 동일한 수의 주민을 포함하고 가능한 밀집된 형태를 취하도록 재조정되거나 변경되어야 하고 앞서 규정한 것처럼 다음 10년의 첫 번째 년도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항상 인접한 지역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어떠한 카운티도 해당 카운티 내에 2개 이상의 완전한 지역구를 형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원 지역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다.] 의원석 배분을 위한 비율을 완전히 충족하고도 남을 정도의 인구를 보유한 타운을 제외한 어떠한 타운 및 거리 또는 공공도로로 둘러싸인 시에 위치한 어떠한 구역도 상원 지역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다[어떠한 것도 또한 그러할 수 없다]. 상원 지역구 재배정시, 어떠한 지역구도 동일한 카운티 내에 인접한 지역구에 대해 해당 지역구에 인접한 지역구에 위치한 타운 또는 구역의 인구를 초과할 수 없다. 위치상으로 두 지역구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될 수 있는 타운 또는 구역은 그렇게 배치하여 해당 지역구가 거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주민수를 갖도록 한다.

어떠한 카운티도 각 상원에 대한 인구비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 4명 이상의 상원의원을 가질 수 없다. 어떠한 카운티도 총 상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가질 수 없으며, 현재 여러 카운티에 인접하거나 공공 수역을 통해서만 분리되어 있는 어떠한 두 개의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의 지역도 모든 상원수의 절반 이상을 가질 수 없다.

(b) 본 항의 섹션 5-b 에 따라 설립되는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는 2021년부터 시작되는 매 10년마다 상원, 하원 및 연방 의회 지역구를 확립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입법부에 상기 계획과 시행 법안을 2022년부터 2로 끝나는 해의 1월 1일까지 또는 그 이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1월 15일까지는 제출하도록 한다. 하원 및 상원을 위한 선거구 확정 계획은 단일 법안으로 포함되어 입법부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며, 연방의회 선거구 계획은 입법부가 그렇게 결정 할 경우 동일 법안에 포함될 수 있다. 시행 법안은 수정 없이 상원 또는 하원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며, 양원 중 한쪽이 투표로 승인했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대측으로 즉시 전달되어 수정 없이 투표를 거치도록 한다. 양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결정을 위해 제출된다.

양원 중 어느 한쪽이 첫 번째 선거구 확정 계획 시행을 위한 법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입법부가 이러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없을 경우, 각 원 또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주지사는 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승인되지 않았음을 통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지가 있는 후 15일 내에 늦어도 반드시 2월 28일 까지, 선거구 확정 위원회는 두 번째 선거구 확정 계획 및 해당 계획에 필요한 시행 법안을 준비하여 입법부에 제출하도록 한다. 시행 법안은 수정 없이 상원 또는 하원의 투표를 거치도록 하며, 양원 중 한쪽이 투표로 승인했을 경우 해당 법안은 상대측으로 즉시 전달되어 수정 없이 투표를 거치도록 한다. 양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결정을 위해 제출된다.

양원 중 어느 한쪽이 두 번째 선거구 확정 계획의 시행을 위한 법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입법부가 이러한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없을 경우, 각 원은 해당 시행 법안을 각 원이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수정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이러한 모든 수정안은 본 조에 제시된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양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법안은 주지사의 결정을 위해 제출된다.

본 조항에 의거한 모든 선거구 확정 계획에 대한 상원 또는 하원의 투표는 다음 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다른 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본 조항의 섹션 5-b의 세부조항 (f)에 따라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원에 선출된 의원 중 다수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지해야 한다.

(2)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다른 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본 조의 섹션 5-b의 세부조항 (g)에 따라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원에 선출된 의원 중 60 퍼센트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지해야 한다.

(3) 상원 의장 및 하원의 임시 의장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본 조항의 섹션 5-b의 조항 (f) 또는 (g)에 따라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제출한 법안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원에 선출된 의원 중 3분의 2가 해당 법안의 처리를 지지해야 한다.

(c) 연방 헌법 및 법률의 요구사항 및 주 헌법의 요건에 따라, 주 상원 및 주 하원 지역구 및 연방 의회 지역구를 생성하는 데 있어 다음의 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1) 지역구 경계선을 정할 때, 위원회는 해당 경계선이 인종 또는 언어적 소수층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구 획정이 이러한 권리를 거부 또는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거나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지역구는 상황의 총체성(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을 고려하여 인종 또는 소수 언어 집단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거나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선출할 기회를 전체 유권자 중 다른 구성원보다 적게 갖게 되는 일이 없도록 확정되어야 한다.

(2) 가능한 지역구는 최대한 동수의 주민을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각 지역구의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일탈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3) 각 지역구는 인접한 지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4) 각 지역구는 가능한 한 조밀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5) 지역구 획정은 경쟁을 저해하거나 재임자 또는 기타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위원회는 현재의 지역구, 카운티, 시, 및 타운을 포함한 기존의 정치적 하위조직 및 이익 공동체의 핵심을 유지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6) 상원 지역구를 확정할 때, 위치상으로 두 지역구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될 수 있는 타운 또는 구역은 그렇게 배치하여 해당 지역구가 거의 동일한 주민 수를 갖도록 한다. 상원 선거구가 카운티 또는 타운을 분리해서는 안되다는 요구사항은 '접경 구역(block-on-border)' 및 '접경 타운(town-on-border)' 원칙과 함께 계속 유지된다.

선거구 확정 계획 작성 시,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는 연방 의회 및 주 입법부의 지역구 변경을 위한 제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다음에 열거된 각 지역에서 적어도 1 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i) 시: 알바니(Albany), 버팔로(Buffalo), 시러큐스(Syracuse), 로체스터(Rochester) 및 화이트 플레인스(White Plains) 및 (ii) 카운티: 브롱스(Bronx), 킹스(Kings), 뉴욕(New York), 퀸즈(Queens), 리치먼드(Richmond), 및 나쏘(Nassau) 및 서퍽(Suffolk). 상기 공청회에 대한 공지는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수단과 매체를 통해 공청회 개최 전 상당한 시간 동안 널리 공표되어야 한다. 첫 번째 공청회 개최 최소 30 일 전으로 반드시 1 로 끝나는 해의 9 월 15 일 전까지 또는 그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는 선거구 확정 계획 초안, 관련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인쇄된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최상의 기술을 사용하여 널리 대중에 알려야 한다. 이러한 계획, 데이터 및 정보는 대중이 해당 계획을 검토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위원회에 제시하도록 대안의 선거구 확정 계획을 개발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는 선거구 확정 계획을 입법부에 제출 할 시 모든 공청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d) 상원의원 배분 비율은 거류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수를 50 으로 나눈 수이며, 상원은 항상 50 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나 배분 당시 3 명 이상의 상원의원을 가진 카운티가 있을 경우 앞서 말한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비율에 더하여 추가로 상원 의원을 할당 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추가된 상원의원은 50 명의 상원의원에 더하여 해당 카운티에 배분되어 총 상원 의원수는 그 만큼 늘어날 수 있다.

상원 지역구를 재조정 또는 변경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존재하고 있던 현재 지역구를 포함한 상원 지역구는 상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만료 후 새롭게 시작되는 전체 임기를 채울 상원 의원을 선출하거나 하원 지역구를 형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주의 상원 지역구로 유지된다.

(e) 법정이 위법 사항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선거구 획정 계획의 채택 또는 변경을 명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의 본 섹션, 섹션 5 및 5-b 로 성립되는 연방 의회 및 주 입법부 지역구와 관련한 절차에 따라 뉴욕주의 선거구 획정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의석 재분배 계획 및 해당 계획에 포함된 지역구는, 법원 명령에 따라 수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0 으로 끝나는 해에 매 10 년차 수행되는 차후의 연방 인구조사에 따라 계획의 발효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5. 하원 의원은 뉴욕주의 여러 카운티 중 거류 외국인을 제외한 각 주민수에 최대한 의거해 단일 지역구에서 선택되며 상원 지역구가 재조정 또는 변경되는 각 정기 의회에서 본 조의 본 섹션, 섹션 4 및 섹션 5-b 에 따라 [입법부에 의해] 배분된다. 해밀턴(Hamilton) 카운티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구성된 각 카운티는 항상 한 명의 하원을 가질 수 있으며 이후 어떠한 카운티도 한 명의 의원에 해당되는 인구수를 갖지 않는 이상 건립될 수 없다. 해밀턴 카운티는 인구 비율에 따라 의원수 한 명에 해당하는 인구수를 충족할 때까지 풀턴(Fulton) 카운티와 함께 선출한다. 단, 입법부는 해밀턴 카운티를 폐지하고 해당 지역을 일부 다른 카운티나 카운티들에 병합할 수 있다.

거류 외국인을 제외한 주의 총 주민수를 하원 의원수로 나눈 몫이 의원석 배분을 위한 비율이 되며 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하나의 카운티로 간주되는 풀턴과 해밀턴을 포함하여 해당 인구비에는 못 미치나 절반은 초과하는 모든 카운티에는 한 명의 하원 의원이 배분된다. 두 개의 카운티마다 두 명의 의원이 배분된다. 하원의 남은 의원석은 거류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수가 해당 인구비의 2 배 이상인 카운티에 배분된다. 나머지로 배분된 의원석은 나머지 수가 가장 큰 카운티 순으로 각각 배분된다. 어떠한 카운티도 자신보다 거류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수가 더 많은 카운티보다 더 많은 하원수를 가질 수 없다.

카운티에 하원 의원 배분을 시행할 법이 제정되기 직전에 존재하는 현재의 지역구를 포함한 하원 지역구는 하원 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만료 후 새롭게 시작되는 전체 임기를 채울 하원 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주의 하원 지역구로 유지된다.

한 명 이상의 의원을 배분받을 수 있는 카운티에서는 감독 위원회(the board of supervisors)가, 하나의 카운티 전체를 포괄하고 감리 위원회가 없는 시에서는 시의회(the common council)가, 둘 다 없을 경우에는 시의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에서, 의원 수를 할당하는 입법부에서 지시할 때에,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소집되어 해당 카운티를 최대한 밀집한 형태의 인접한 지역으로 이루어진 거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최대 가능한 동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하원 지역구로 분류하며, 이러한 지역구 각각은 동일한 배분을 통해 형성된 상원 지역구 내에 완전히 포함되어야 하고, 해당 카운티에 배분되어야 할 하원 의원수와 동일해야 하며, 각 지역구의 수, 해당 지역구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 인구조사 또는 집계 결과에 따른 거류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수를 상세히 제시하는 해당 지역구에 대한 내용을 주정부 사무국(the secretary of state) 및 카운티 서기장 사무실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의원 한 명에 해당하는 인구비 및 그 절반을 초과하는 인구를 가진 타운을 포함한 카운티의 감리 위원회가 언제든지 또는 1946년 3월 1일 전에 해당 타운을 포함한 상원 지역구 내의 하원 지역구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은 예외로 하되, 이러한 배분 및 지역구는 차후 하원 의원의 재분배가 있을 때까지 변경없이 유지된다. 하나 이상의 상원 지역구를 포함한 카운티의 경우, 하원 지역구를 해당 카운티의 상원 지역구 중에 균등하게 배분할 수 없어 상황에 따라 거류 외국인을 제외한 주민수가 가장 많은 카운티에 위치한 상원 지역구 내에 하원 지역구 하나를 더 배분하고 주민수가 가장 적은 카운티에 위치한 상원 지역구에 하원 지역구 하나를 덜 배분해야 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되, 동일한 수의 하원 지역구가 각 상원 지역구에 배분되어야 한다. [의원석 1 개에 해당하는 인구비를 충분히 충족시키면서 그 절반이 넘는 인구수를 가진 타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타운도, 거리 또는 공공 도로로 둘러싸인 도시 내의 위치한 어떠한 구역도, 하원 지역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어떠한 지역구도, 동일한 상원 지역구 내에 위치한 인접한 지역구에 대해, 해당 지역구에 인접한 지역구에 위치한 타운 또는 구역의 인구를 초과할 수 없다. 위치상으로 두 지역구 중 어느 쪽에도 포함될 수 있는 타운 또는 구역은 그렇게 배치하여 해당 지역구가 거류 외국인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주민 수를 갖도록 한다.] 본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언제라도 입법부가 카운티 및 타운을 분할하거나 새로운 타운을 설립하는 것을 제지할 수 없다.

입법부 또는 다른 조직에 의한 의석 분배는 입법부가 규정한 합리적인 규정에 따라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였을 시 대법원의 검토를 받도록 하며, 의석 분배와 관련된 사건이 계류될 법원은 다른 소송 및 법적 절차보다 해당 사건을 우선해야 하며 해당 법원이 휴회 중일 경우 해당 사건의 처분을 위해 신속히 소집되어야 한다. 해당 법원은 탄원서 접수 후 60일 이내에 판결을 언도하여야 한다. 연방 의회 또는 주의회 지역구 획정과 관련된 모든 사법 절차에서,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의회 또는 주의회 지역구 설정과 관련된 어떠한 법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가 된다. 법원에서 이러한 위반을 발견했을 경우, 입법부가 본 법의 법적 취약성을 수정할 수 있는 완전하고 합리적인 기회를 갖도록 한다.

§ 5-b. (a) 0 으로 끝나는 각 해의 2월 1일이나 그전까지 및 법원에서 연방 의회 또는 주의회 지역구를 수정할 것을 명령할 시 언제라도, 의회 및 주의회를 위한 지역구 경계선을 획정을 위해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한다.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지명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1) 위원 2 명은 임시 상원 의장이 지명한다.

(2) 위원 2 명은 하원 의장이 지명한다.

(3) 위원 2 명은 상원의 소수당 당수가 지명한다.

(4) 위원 2 명은 하원의 소수당 당수가 지명한다.

(5) 위원 2 명은 본 세부조항의 (1)부터 (4)까지의 항에 따라 최소 5 명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지명된 8 명의 의원이 지명하며, 이 두 명의 위원은 뉴욕주에서 가장 많은 또는 두 번째로 많은 등록 유권자를 포함한 두 개의 정당 중 하나에 5 년 동안 등록한 적이 없어야 한다.

(6) 위원 1 명은 본 세부조항의 (1)부터 (5)까지의 항에 따라 지명된 과반수 초과 위원들을 통해 위원회 의장으로 지명되어 위원회의 각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한다.

(b)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의 위원은 뉴욕주에 등록된 유권자이어야 한다. 위원 중 어느 누구도 지난 3 년간 다음에 해당되서는 안된다.

(1) 현재 뉴욕주 의회 또는 미국 연방 의회 또는 주정부 선출직 공무원이거나 과거에 그러하였음.

(2) 현재 공무원법 섹션 73 에 규정된 주 공무원 또는 의회 직원이거나 과거에 그러하였음.

(3) 현재 뉴욕주에 등록된 로비스트이거나 과거에 그러하였음.

(4) 공무원법 섹션 73 의 세부조항 1 의 (k)절에 규정된 대로 현재 정당의 당수이거나 과거에 그러하였음.

(5) 주 선출직 공무원 또는 미국 연방 의회 또는 주의회 소속 의원의 배우자임.

(c)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 의원은 인종, 민족, 성별, 언어 및 거주 지역 측면에서 주 거주민의 다양성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임명권자는 소수자의 투표권 보호를 전담하는 기관 및 잠재적인 지명자와 관련된 기타 유권자들과 최대한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d) 의회 구성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최초 지명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30 일 이내에 총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e) 입법부는 법에 따라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제 비용 및 필수 비용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f) 본 섹션의 세부조항 (a)의 (5)절에 따라 두 명의 위원이 지명되기 전에는 어떠한 업무 처리 또는 위원회의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최소 다섯 명의 의원이 정족수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이 지명된 후에는 최소 일곱 명의 위원이 정족수를 구성하며, 최소 과반수를 초과하는 찬성표 없이는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의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단, 어떠한 선거구 확정 계획 및 시행 법안도 다음의 규칙에 부합해야 한다.

(1)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입법부에 제출할 선거구 확정 계획 및 시행 법안의 승인은 각 입법부 당수가 지명한 최소 한 명의 위원을 포함한 최소 7 명의 위원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2)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다른 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위원회가 입법부에 제출할 선거구 획정 계획 및 시행 법안의 시행은, 하원 의장이 지명한 최소 한 명의 위원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지명한 한 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최소 7 명의 위원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g) 위원회가 2로 끝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 또는 그 이후 최대 빠른 시일 내에 선거구 획정 계획을 승인하는 7표를 획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입법부에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선거구 획정 계획 및 시행 법안을 투표수 기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하나 이상의 계획이 다른 계획보다 높은 찬성표를 기록하고 동수를 기록했을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투표수를 획득한 모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다. 입법부는 본 조 섹션 4의 하위 조항 (b)에 규정된 투표 규칙에 따라 해당 시행 법안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투표를 시행한다.

(h) (1)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위원회 다수의 투표를 통해 두명의 공동 사무총장(co-executive directors)을 지명한다.

(i)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다른 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공동 사무총장은 하원 의장이 지명한 최소 한 명의 지명자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지명한 최소 한 명의 지명자를 포함하여 위원회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ii)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공동 사무총장은 입법부의 각 당수가 지명한 최소 한 명의 지명자를 포함하여 위원회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공동 사무총장 중 한 명은 뉴욕주에서 등록된 회원이 가장 많은 정당에 등록되어 있고 다른 한 명은 뉴욕주에서 등록된 회원이 두 번째로 많은 정당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 사무총장은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지명하도록 한다. 단, 공동 사무총장이 작성하고 제공한 채용 계획은 위원회가 검토하도록 하며 해당 계획은 다양한 직책, 임무 및 각 직책과 관련한 연봉의 목록을 포함해야 한다.

(3) 위원회가 일곱 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족수를 구성한 후 45일 이내에 한 명 또는 두 명의 공동 사무총장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 다음 절차가 진행된다.

(i)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다른 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하원 의장이 위원회에 지명한 지명자는 한 명의 공동 사무총장을 지명하고, 상원 임시 의장이 지명한 지명자는 다른 공동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다. 또한 10일 이내에 하원의 소수당 당수는 한 명의 공동 사무총장 대행, 상원 소수당 당수는 다른 한 명의 공동 사무총장 대행을 선택한다.

(ii)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동일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의 지명자가 함께 한 명의 공동 사무총장을 지명하고, 위원회에 두 명의 소수당 당수가 지명한 자가 함께 다른 공동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다.

(4) 공동 사무총장 또는 공동 사무총장 대행 자리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급은 공석 발생 10일 이내에 전임자를 지명하였던 동일한 지명권자를 통해 총원되어야 한다.

(i) 주 예산에 따라 독립된 선거구 조정 위원회의 지출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하고, 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비용을 상환하며, 위원회에 법무부가 본 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추가적인 업무를 할당하고, 뉴욕주의 다른 기관 및 공무원 및 정치적 하위조직에게 위원회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도록 한다.

§ 2. 선거법 규정에 의거해 2014 년 열릴 총선거에서 전술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민의 승인을 구할 것을 결의함(상원 동의 시).

## 제안 1 번, 수정안 발췌

### 주의 선거구 확정 절차를 개정

본 제안의 목적은 헌법에서 매 10 년마다 요구하는 새로운 주의회 및 연방 의회 지역구 확정 과정을 개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안이 승인될 경우, 의회 및 연방 의회 지역구의 경계선을 결정하기 위해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설립되게 되며, 위원회의 계획은 입법부가 채택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헌법의 현 규정에 따르면, 이러한 경계선 확정을 담당하는 주체는 입법부입니다.

이 수정안은 주 헌법 제 3 조 섹션 4 및 5 를 수정하고 새로운 섹션 5-b 를 추가하게 됩니다. 새로운 섹션 5-b 는 주의회 및 연방 의회 지역구 경계선을 확정할 선거구 조정 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2020 부터 매 10 년간, 10 인의 선거구 조정 위원회가 수립됩니다. 8 명의 위원은 4 명의 주의회 당수가 지명하고 나머지 2 명의 위원은 입법부의 지명을 받은 8 명의 의원이 지명하게 됩니다. 나머지 2 명의 위원은 앞선 5 년 동안 뉴욕주에서 2 개의 주요 정당에 등록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수립하게 됩니다. 위원들은 반드시 뉴욕에 등록된 유권자이어야 합니다. 위원들은 주 선출직 공무원 또는 미국 연방 의회 또는 주의회 소속 의원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뉴욕주 의회, 미국 연방 의회에 소속된 의원이거나 주정부 선출직 공무원, 주 공무원 또는 주의회 직원, 뉴욕주에 등록된 로비스트 또는 정당의 의장이거나 3 년 이내에 이를 역임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 수정안은 가능한 최대 위원회 의원 배분이 뉴욕 주민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외부 조직의 협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선거구를 형성하는 데 적용될 원칙을 수립하며 이는 연방 및 주 헌법 및 연방 법률의 요건에 따라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어떠한 지역구 경계선도 법으로 금지된 인종 또는 언어적 소수집단의 투표권을 거부하거나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지역구는 이러한 권리를 거부하거나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확정될 수 없다.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 가능한 지역구는 최대한 동수의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러한 원칙에 벗어나는 경우가 존재할 경우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 각 지역구는 인접한 지역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최대한 조밀한 형태를 취해야 한다.
- 지역구 획정은 경쟁을 저해하거나 재임자 또는 기타 특정 후보 또는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현재의 지역구, 기존의 정치적 하부조직들 및 이익 공동체의 핵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선거구 확정 계획을 준비할 때, 위원회는 주 전체에 최소 12 번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대중은 공청회에 대한 안내를 받고 첫 번째 공청회 이전에 위원회의 선거구 확정 계획, 관련 데이터 및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선거구 확정 계획을 제출할 시 공청회 결과를 입법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회의 투표 요건을 수립하게 됩니다. 입법부에 선거구 확정 계획을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0 명의 위원회 의원 중 7 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하나의 정당이 입법부를 지배할 경우, 7 개의 찬성표에는 4 명의 입법부 지도자 각각이 지명한 최소한 한 명의 위원의 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입법부를 지배할 경우, 7 개의 찬성표에는 하원 의장이 지명한 최소한 한 명의 위원과 상원 임시 의장이 지명한 위원 한 명의 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 7 명의 위원이 선거구 확정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가장 많은 찬성표를 얻은 계획이나 계획들을 투표수 기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하원 및 상원에 대한 선거구 확정 계획을 하나의 법안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법부는 해당 단독 법안에 대해 수정 없이 투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계획이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거부권을 무효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다른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획이 입법부를 통과하지 못하고 주지사의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거부권을 무효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입법부는 두 번째 계획을 필요한 경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정된 계획은 위원회의 계획에 적용된 동일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정된 계획이 입법부의 승인을 받을 경우, 주지사의 결정을 위해 제출됩니다.

이 수정안은 입법부가 선거구 확정 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투표 요건을 수립하게 됩니다.

-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으며, 필요한 수만큼의 위원회 위원이 입법부에 제출된 선거구 확정 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승인을 위해서는 입법부의 각 원으로 선출된 의원 중 최소 과반수를 초과하는 찬성표를 받아야 합니다.

주- 밑줄친 부분은 신설된 내용, 괄호[] 안의 내용은 기존의 법에서 삭제될 부분을 의미합니다.

- 하원 의장 및 상원 임시 의장이 서로 다른 정당에 속해 있으며, 필요한 수의 위원회 위원이 입법부에 제출된 선거구 확정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을 경우, 입법부의 각 원으로 선출된 의원 중 최소 60%가 계획을 승인하는 데 찬성해야 합니다.
- 하원 의장 및 임시 상원 의장이 동일한 정당에 속해 있을 경우, 입법부 각원으로 선출된 의원 중 적어도 2/3 가 계획을 승인하는 데 찬성해야 합니다.

이 수정안은 60 일의 기간을 두어 법원이 의석 분배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에 대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며, 입법부는 법원이 선거구 확정 계획에서 발견한 법적인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수정안은 위원회의 임무를 수행할 양당의 직원을 구성하며 위원회 지출에 대한 예산 할당을 허가하게 됩니다.

### 제안 1 번, 수정안 제출 형식

#### 주의 선거구 확정 절차를 개정

이 수정안은 주 헌법 제 3 조의 섹션 4 및 5 를 개정하고 새로운 섹션 5-b 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주의회 및 연방 의회의 지역구에 대한 선거구 확정 절차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안은, 2020 부터 매 10 년 마다, 4 명의 입법부 지도자가 각각 지명한 2 명의 위원 및 8 명의 입법부 지명자가 선택한 2 명의 위원을 포함한 선거구 확정 위원회를 수립하고, 의회 의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 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선거구 수립시 적용될 원칙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제안된 선거구 확정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의무화하며, 위원회의 선거구 확정 계획이 입법부의 법제화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의 계획을 입법부가 2 번 거부할 경우 입법부는 수립된 원칙에 따라 해당 선거구 확정 계획을 수정만 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선거구 확정 계획에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신속한 법원의 심리를 허용하고,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초당파 직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을 승인하시겠습니까?

전술한 주민투표 제안 1 번, 수정안의 내용은 주 국무부에 보관된 원본과 동일한 사본임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발췌문 및 제출 형식은 2014 년 9 월 17 일 인덱스 번호 4275-14 (McGrath, J.), *Lieb v. Walsh* 사건에 대한 알바니 카운티 대법원의 판결 및 명령에 따라 개정되었습니다.

2014 년 9 월 22 일 알바니 시에서 주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서명 날인함.

Robert A. Brehm

공동위원장

뉴욕주 선거 관리 위원회

Todd D.Valentine

공동위원장

뉴욕주 선거 관리 위원회